

2026년 가구 스마트제조공정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 관내 중소 가구 제조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2026년 가구 스마트제조공정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9.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가구 스마트제조공정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6. 2. 9. ~ 2026. 3. 20. 18:00 까지
- 지원방법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산업지원정보시스템 온라인접수(www.gdtpi.or.kr/recpt)
 - (온라인접수 불가 시 이메일 신청 접수 smartfactory@gdtp.or.kr 경기북부스마트제조혁신센터)
- 지원내용
 - 가구 제작 및 디자인, 설계 표준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 교육, 컨설팅 비용 지원
 - * 3D 설계/도면작성/렌더링 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춘 시스템

구분	사업비(100%)	
	도비 지원금(70%)	기업 자부담(30%)
총 사업비 (부가세 미포함)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25,000천원)	총 사업비의 도비 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
지원규모	12개사	
사업기간	협약 후 ~ 26년 11월 이내 구축 완료 필수	

○ 지원대상

- 경기도 내에 소재한 중소 가구 제조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으로 신청 가능하며,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신청 가능(공장등록증 필수)

○ 신청자격

- (도입기업)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제조기업으로서 가구 제작 및 디자인, 설계 표준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솔루션을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함
- (공급기업) 가구 제작 및 디자인, 설계 표준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프로그램 교육 및 컨설팅 필수)

○ 신청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등 경기도 범위반 기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가구 스마트제조공정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도입한 가구 구축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

2 세부 지원내용

□ 프로그램 구축, 교육, 컨설팅 지원

○ 가구산업 디지털 전환(스마트제조공정)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 3D로 빠르고 효율적인 설계/도면작성/렌더링 진행
- 설계/렌더링 즉시 CNC 머신이 작동하는데 필요한 코드 생성하여 설비 제어 진행
- 자체 보유 재고량 및 유통, 판매 내역과 연계되어 전반적인 생산 관리 가능

○ 교육 및 컨설팅

- 스마트제조공정시스템 프로그램 사용법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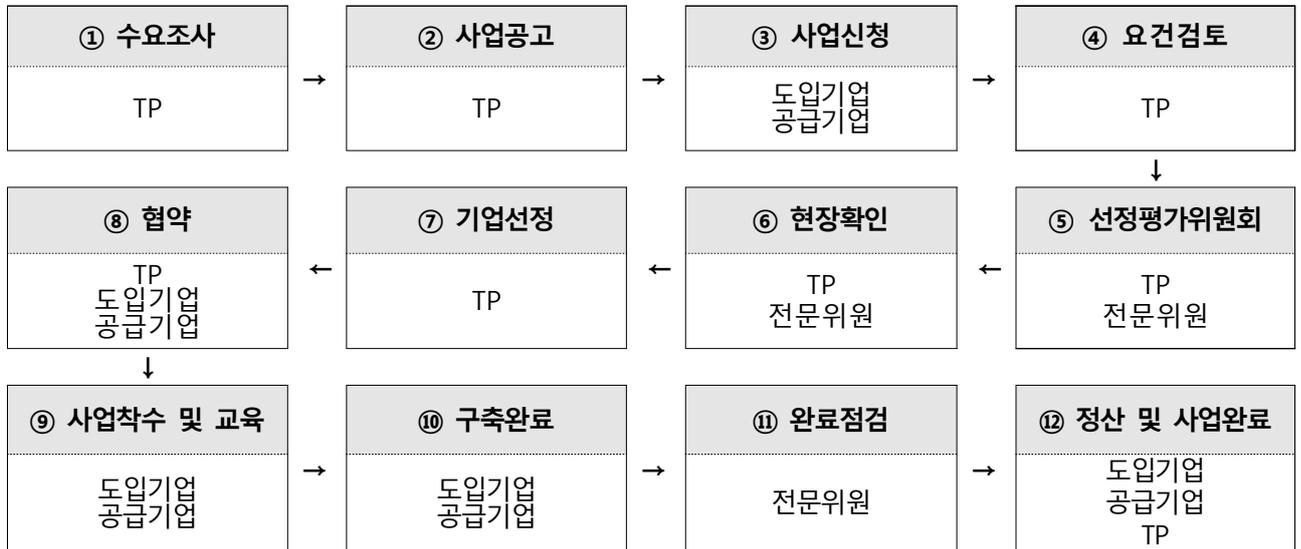
○ (지원조건)

- 구축 지원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 도비 지원(최대 25,000천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구축장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주소지와 동일해야 하며, 구축장 내에 구축하여야 함
- 구축 지원 접수 및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선정과제 및 후보과제*를 정함
* 후보과제 : 평가결과 미선정되었지만, 선정과제 포기 또는 중도 해약시 지원가능한 과제
- 지원사업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이 협약체결 이후 확인된 경우,

협약 해약 및 도 지원금 환수

- 도입기업은 과제 지원 후 실시하는 만족도 및 성과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우수 지원사례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지원절차



□ 선정절차

- ①요건검토 → ②선정평가위원회 → ③현장확인

구분	개요	평가기준
①요건검토	- 사업 참여 희망기업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등을 확인	- 중대 하자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사업에서 제외
②선정평가위원회	- 서류평가(사업계획서 등) 및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적합성을 평가 - 범위반 기업은 선정평가위원회 전 총점의 20% 감점 통보 후 기업의 이의 및 구제 신청 시 선정평가위원회 상정 심의	- 선정평가위원회 최종점수로 선정과제 및 후보과제 선발 - 우대가점* 점수 기준[최대 5점] * 우대가점 : 기업RE100 참여기업(2점),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2점), 주4.5일제 도입기업(2점) - 이의신청 기업의 감점 여부를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여부 결정
③현장확인	- 선정평가위원회 점수에 따라 예산 허용 범위 내 지원 가능한 기업에 대해 사업계획서와 기업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허위 기재여부, 기보유 설비 이상 유무 등 확인	- 사업계획서와 현장 일치 여부 확인

□ 평가 기준 및 가점·감점 사항

○ (선정평가 기준)

평가 항목		배점
도입 기업 역량 (30)	◦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10
	◦ 도입기업의 현 생산 공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 도입기업의 가구 스마트제조공정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10
공급 기업 역량 (10)	◦ 공급기업의 자체적인 솔루션 보유 여부 및 협약기간 내 도입기업이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 완료 가능한가?	10
구축 필요성 (30)	◦ 가구 스마트 제조공정시스템 구축의 범위가 명확하고, "핵심성과지표"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10
	◦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20
사업 지원 적정성 (30)	◦ "구축 솔루션과 기존 장비 연계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핵심성과지표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10
	◦ "AS-IS 대비 TO-BE비교표"와 "소프트웨어 기능 구성도"의 서술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10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사용자 교육·훈련 계획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과 후속조치 방안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5
합계		100

○ (가점 사항) 신청기업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점 적용

구분	가점 항목	증빙서류	배점
1	기업RE100 참여기업	기업RE100 참여기업 인증서	2
2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서	2
3	주4.5일제 도입기업	주4.5일제 도입기업 인증 기업	2

※ 사업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 (감점 사항)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법 위반 사실이 유예대상 47개 범위반 행위(이미 치유가 완료된 행위 또는 치유 예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범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제출 시 감점 미적용 (이행각서 미제출 시 유예없이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유예대상 47개 범위반 행위 (붙임 1) 참조

적용법률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	비고
1. 공정	① 공정거래법	(소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서류제출) 건별 법위반 사실 확인서 (조 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건심사·의결 조회 위반사실 여부 조회	신청기업 일괄조회 (신청자 미제출)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2. 노동	④ 근로기준법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청 (서류제출) 기업소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청 법위반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신청 발급 (조 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지방청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	
	⑤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소관기관) 환경부,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환경부, 기업소재 관할 시군 행정처분 내역 및 법위반 사실 확인서 등 증빙서류 신청 발급 (조 회) 환경부,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⑩ 국세기본법	(소관기관)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법위반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신청 발급,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조 회)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	과제 신청시 제출
	⑪ 지방세기본법		

- 사업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11개 법률) 확인 시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경기도 지원 사업 참여 자격 제한
-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현장확인 점검 항목) 현장확인 시 1개 이상의 '부' 항목이 있는 경우 협약 대상 제외

점 검 항 목		확인여부
신청서 대조·확인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부
	◦ 활용계획서(현행)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부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적/부

3 신청 접수

□ 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6년 2월 9일 ~ 2026년 3월 20일 18:00 까지 신청 접수
- 사업 신청단계 제출서류(사업 신청시 제출)
- 온라인 제출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산업지원정보시스템 온라인접수(www.gdtpi.or.kr/recpt)
(온라인접수 불가 시 이메일 신청 접수 smartfactory@gdtp.or.kr 경기북부스마트제조혁신센터)
- 문의처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북부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39-5140, smartfactory@gdtp.or.kr
- 사업 신청단계 제출서류 목록

구분	사업 신청단계 제출 필요 서류	필수여부	비고
1	(도입기업) 사업신청서 1부	필수	
2	(도입기업) 사업계획서 1부	필수	
3	(도입기업) 소기업/중기업 해당 확인서 1부	필수	참여자격 확인
4	(도입기업, 공급기업) 정보활용동의서 1부	필수	
5	(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납세증명서: 홈택스-민원증명-국세증명신청-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정부24-지방세 납세증명서 검색-민원출력	필수	참여자격 제한사항 확인
6	(도입기업,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종턴사업장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턴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홈택스(www.hometax.go.kr)-민원증명-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필수	도입기업 도내기업 여부 및 구축장소 확인
7	(도입기업) 공장등록증 1부	필수	
8	(도입기업)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 (24년, 25년)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필수	종업원수 및 프로그램 교육 대상자 확인
9	(도입기업) 22년, 23년, 24년 재무제표 * 홈택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필수	매출액 및 부채비율 확인
10	(도입기업)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필수	
11	(도입기업) 기업의 범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약약서 1부	필수	
12	(도입기업) 기업의 범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	해당시	
13	(도입기업) 우대가점 증빙서류(해당시) 1부 * 기업RE100 참여기업 *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 주4.5일제 도입기업	해당시	가점증빙 확인

4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 및 계획서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환수 및 제재할 수 있음
- 선정평가는 발표평가 진행

-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사업비 입금계좌 신고 및 불법·부당행위 방지 서약서 1부
 5. 완료보고서(점검표) 1부
 6.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7. 기업의 범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8. 기업의 범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 1부

구분	법령	법위반 행위
1	공정거래법	• 지주회사 설립 불성실신고
2	공정거래법	•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 불성실신고
3	표시광고법	• 공정위 조사에 불출석
4	근로기준법	• 노동위, 근로감독관에 대한 불성실 보고
5	근로기준법	• 법령 등 주요 내용 게시 의무 위반 (취업규칙 등에 관한 열람보장 위반)
6	근로기준법	• 사용증명서 발급 위반 (미발급)
7	근로기준법	• 근로자명부 작성 위반 (미작성)
8	근로기준법	• 계약서류 보존 의무 위반 (계약서류 미보존)
9	근로기준법	•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의무 위반 (대장, 명세서 미작성)
10	근로기준법	• 연소자 증명서 비치 위반(미비치)
11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취업관련 규칙의 신고 미이행)
12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지도사 등록, 등록갱신 미이행
13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지도사의 보증보험 미가입 등 필요조치 미이행
14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지도사의 직무 수행 중 작성한 서류 등에의 기명 날인 서명 미이행
15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사실의 불성실 보고
16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 참여 의무 위반 (근로자대표 참여 배제)
17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발생 불성실 보고
18	산업안전보건법	• 위생시설 설치장소 미제공 및 시설 이용 비협조
19	산업안전보건법	• 휴게시설 미설치
20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불이행
21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위반
22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위반 (책임자 미지정)
23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위반 (미작성)
24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5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대표의 참석의무 미이행
26	산업안전보건법	• 불성실 보고

구분	법령	법위반 행위
27	폐기물관리법	• 전용용기제조업 등록 불성실 신고
28	폐기물관리법	• 불성실 신고 보고를 통해 적합성 확인 구득
29	폐기물관리법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에 관한 불성실 신고
30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의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불성실 입력
31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불성실 신고
32	폐기물관리법	•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입력
33	폐기물관리법	• 유해성 정보자료의 불성실 작성
34	폐기물관리법	•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미제공
35	소음진동관리법	•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의 불성실 신고
36	소음진동관리법	• 변경신고의 불성실 신고
37	소음진동관리법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의 불성실 신고
38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허용기준 위반 운행자의 개선사항 불성실 보고
39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 실시
40	물환경보전법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시작 불성실 신고
41	물환경보전법	•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의 불성실 신고
42	물환경보전법	• 비점오염원 설치의 불성실 신고
43	물환경보전법	•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의 불성실 관리
44	물환경보전법	• 공유수역 관리 규정의 미 이행
45	물환경보전법	•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의 불성실 입력
46	물환경보전법	•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 시행
47	지방세기본법	•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